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 28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기술 표준 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안전기준 제·개정 의견을 반영하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안전과 무관한 안전요건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전지’의 안전기준에 국제기준(IEC 62133)을 토대로 열노출 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의 조건을 강화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 ‘디지털 도어록’의 안전요건에 내한성, 내열성, 내습성 등 환경시험 항목을 신설
- ‘이륜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유사 산악용 자전거의 차체 강도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내하중 낙하 충격시험 신설
-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합성세제의 안전기준에서 품질과 관련된 계면활성제 상당분에 대한 요건을 삭제
- ‘일회용 기저귀’의 안전요건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적은 형광증백제 용출에 대한 요건을 삭제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요건 중 안전과 무관한 A종에 대한 길이 요건을 삭제
- 표시사항 중 품명, 모델명의 표시는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국명 표시를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도록 명확화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5 「건전지」, 부속서 7 「생활화학 가정용품」, 부속서 22 「디지털 도어록」, 부속서 40 「이륜 자전거」, 부속서 41 「일회용 기저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5 건전지 (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제2부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의 안전성</p> <p>(Safety requirements for portable lithium secondary cells, and for batteries made from them,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p>	
	<p>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지(체적당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의 것) 및 이들로 조립된 전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내비게이션, PMP 및 MP3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는 체적당에너지밀도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차량 구동용, 산업용, 의료용(휴대용 의료기기는 제외), 단추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은 그 협신판을 적용한다.</p> <p>KS A ISO/IEC Guide 51 안전 측면-규격에 안전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p> <p>KS C IEC 60050-482 국제 전기 용어 - 제482장 : 1차 및 2차 단전지와 전지</p> <p>IEC 60051 (all parts) Direct acting indicating analogue electrical measuring instruments and their accessories</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KSC IEC 61438 알칼리성 2차 단전지와 2차 전지 사용시 발생 가능한 안전위생사고 장비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p> <p>KS C IEC 61951-1 휴대용 밀폐 니켈-카드뮴 축전지</p> <p>KS C IEC 61951-2 휴대용 밀폐 니켈-수소 축전지</p> <p>KS C IEC 61960-1 휴대 기기용 리튬 2차 단전지</p> <p>KS C IEC 61960-2 휴대 기기용 리튬 2차 전지</p> <p>IEC 60051(all parts) Direct acting indicating analogue electrical measuring instruments and their accessories</p> <p>IEC 60485 Digital electronic d.c. voltmeters and d.c. electronic analogue-to-digital converters</p> <p>IEC 61440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Sealed nickel-cadmium small prismatic rechargeable single cells</p> <p>1.3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정의뿐 아니라 KS C IEC 60050-486과 KS A ISO/IEC Guide 51에 포함된 정의도 적용된다.</p> <p>1.3.1 안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의 자유</p> <p>1.3.2 위험 유해가 일어남 가능성과 그 유해의 심각성의 조합 1.3.3 유해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육체적 부상이나 손상 또는 재산 혹은 환경에 대한 손상</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1.3.4 해저드 유해의 잠재적인 근원</p> <p>1.3.5 의도된 용도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시방, 지침 및 정보와 부합하는 제품, 공정 또는 기능의 사용</p> <p>1.3.6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공급자에 의해 의도된 바는 아니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제품, 공정 또는 기능의 사용</p> <p>1.3.7 2차 단전지(secondary cell) 화학 에너지의 적절적인 변화를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본 제조 단위. 전극, 격리판, 전해질, 용기, 단자로 구성되었으며 전기적으로 충전되도록 고안됨.</p> <p>1.3.8 2차 전지(secondary battery) 전압, 크기, 단자 배열, 용량, 성격 용량으로 특징지어지는 전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2차 단전지들의 조합</p> <p>1.3.9 누출 유팽으로 확인 가능한 액체 전해질이 나오는 현상</p> <p>1.3.10 벤트 작동 전지의 폭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계된 대로 전지 내부로부터 과다한 압력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p> <p>1.3.11 파열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기인한 단전지 또는 전지 케이스의 기계적 결함, 내용물의 노출 또는 전해액 등의 누액을 초래하지만 내부 물질의 방출이 일어나지는 않음.</p> <p>1.3.12 폭발 단전지 또는 전지의 케이스가 급작스럽게 개방되어 내부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방출되는 현상</p>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설〉	<p><u>1.3.13 밤 화 단전자 또는 전자로부터 불꽃이 방출되는 현상</u></p> <p><u>1.3.14 휴대용 전자 휴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에 사용되는 전자</u></p> <p><u>1.3.15 휴대용 단전지 휴대용 전자의 조립에 사용되는 단전지</u></p> <p><u>1.3.16 정격 용량</u>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전자를 충전 및 보존한 후, 방전 중 전자 전압까지 0.2 lta의 기준 시험 전류로 방전하였을 때 단전지에서 방전될 수 있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총 전기량(C5Ah)</p> <p><u>1.4 측정 허용 오차</u> 규정된 또는 설계된 값에 대한 조작 및 측정의 전반적인 정확도에 대한 오차 한계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전 암 : $\pm 1\%$ b) 전 류 : $\pm 1\%$ c) 온 도 : $\pm 2^{\circ}\text{C}$ d) 시 간 : $\pm 0.1\%$ e) 치 수 : $\pm 1\%$ f) 용 량 : $\pm 1\%$ <p>이 허용 오차는 측정 기구, 측정 방법 등 시험 절차의 모든 오차 요인을 종합한 결과이다.</p> <p>장비의 선택은 아날로그는 IEC 60051을, 디지털은 IEC 60485를 참고한다. 장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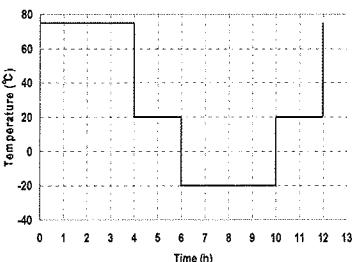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설〉	<p><u>2. 일반적인 안전 고려 사항 2차 단전지</u></p> <p>몇 전지는 다음 두 가지 그룹의 시험을 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의도된 용도의 안전성 시험 b)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시험 <p>단전지 및 전자는 의도된 용도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환경에서 안전하도록 고안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오용 시험을 거친 단전지 또는 전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치명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또한 의도된 용도의 안전성 시험을 거친 단전지 및 전자는 안전한 결과뿐 아니라 모든 축면에서 정상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p> <p>규격에 규정된 각 시험 항목의 잠재 위험성을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밤 화 b) 과열/폭발 c) 전해액의 누출 d) 벤트 작동 e) 외부 온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연소 f) 내부 구성 부품의 노출을 통반하는 전지 케이스의 파열 <p>2.1-2.6의 적합성은 검사로서 행하고, 4.는 적절한 규격(1.2 참조)에 근거한 시험으로 확인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2.1 절연 및 배선 전기적인 접촉면을 제외한 전지의 양극 단자와 외부로 노출된 글속 표면 사이의 절연 저항은 500 V 직류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 $5 \text{ M}\Omega$ 이상이어야 한다.</p> <p>내부 배선과 그것의 절연 상태는 예상되는 전류, 전압 및 온도의 최대값을 견디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배선의 방향은 적당한 봄새 및 변형 거리가 있도록 한다. 내부 배선의 기계적 완결성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시험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기에 충분하여야 한다.</p> <p>2.2 벤트 작동 전지 케이스와 단전지는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과도한 내부 압력을 파열, 폭발, 자기 전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값과 속도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만약 외부 케이스 내에 단전지를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캡슐을 사용한다면 캡슐의 유형과 제조 방법은 정상 작동 중 전지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압력 배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2.3 온도/전류 관리 전지의 설계는 비정상적 온도 상승이 예방되도록 한다. 비고 필요하다면 충전 및 방전 시간 동안 전류를 안전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p> <p>2.4 단자 전지의 외부 표면에는 국성 표시를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 접촉 단자의 크기와 모양은 예상되는 최대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외부 단자 접촉면은 기계적 강도와 내부 식성을 가진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접촉 단자는 단락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p> <p>2.5 전지 내 단전지의 조립 전지 조립에 사용되는 단전지는 균일하게 일치하는 용량, 동일한 디자인 및 동일한 화학 조성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직렬 연결된 단전지 중 일부분의 선택적 방전을 위해 고안된 전지는 불균일한 방전으로 인한 단전지의 극성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회로를 포함해야 한다.</p> <p>2.6 품질 계획 제조자는 재료, 구성 요소, 단전지 및 전지의 검사에 관한 절차들을 정의하고, 각 유형의 단전지 및 전지 생산 공정을 아우르는 품질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p> <p>3. 형식 시험 조건 시험은 제조된 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단전지 또는 전자를 사용하여 표 1에 명시된 단전자 또는 전지의 개수에 대하여 행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시험은 주변 온도 $20 \pm 5^\circ\text{C}$에서 행한다.</p> <p>비고 시험 조건은 형식 시험만을 위한 것이며 의도된 용도가 이러한 조건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3개월의 제한은 일관성을 위해 도입된 것 이지 전지의 안전이 3개월 후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표 1 형식시험을 위한 표본의 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th> <th>단전지 (Cell)</th> <th>전지 (Battery)</th> </tr> </thead> <tbody> <tr> <td>5.2.2.1 고온방치시험</td> <td>2</td> <td>3</td> </tr> <tr> <td>5.2.2.2 온도사이클시험</td> <td>5</td> <td>5</td> </tr> <tr> <td>5.2.3.1 고온단락시험</td> <td>5</td> <td>5</td> </tr> <tr> <td>5.2.3.2 열노출시험</td> <td>5</td> <td>2</td> </tr> <tr> <td>5.2.3.3 압착시험</td> <td>5</td> <td>2</td> </tr> <tr> <td>5.2.3.4 과전류충전시험</td> <td>5</td> <td>2</td> </tr> </tbody> </table> <p>4. 시험 및 요구 사항</p> <p>4.1 시험 목적을 위한 충전 방법 I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변 온도 $20 \pm 5^{\circ}\text{C}$에서 제조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충전한다. 충전 전에 전지는 $20 \pm 5^{\circ}\text{C}$에서 0.2 lA의 일정 전류로 명시된 최종 전압까지 방전되어야 한다.</p> <p>4.2 시험 목적을 위한 충전 방법 II 주변 온도 $45 \pm 2^{\circ}\text{C}$에서 4.25 V의 상한 충전전압 이하에서 제조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정전류, 절전압 충전한다. (단, 이 값은 기기 오차를 포함한 값이다.) 충전 전에 전지는 $20 \pm 5^{\circ}\text{C}$에서 0.2 lA의 일정 전류로 명시된 최종 전압까지 방전되어야 한다. 이 충전방법은 5.2.3.1 고온단락시험, 5.2.3.2 열노출시험, 5.2.3.3 압착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에 적용된다.</p> <p>주의 : 이 시험들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해를 끼칠 수도 있다. 시험은 적절한 보호 설비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추고 경험 있는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p>	시험	단전지 (Cell)	전지 (Battery)	5.2.2.1 고온방치시험	2	3	5.2.2.2 온도사이클시험	5	5	5.2.3.1 고온단락시험	5	5	5.2.3.2 열노출시험	5	2	5.2.3.3 압착시험	5	2	5.2.3.4 과전류충전시험	5	2	
시험	단전지 (Cell)	전지 (Battery)																					
5.2.2.1 고온방치시험	2	3																					
5.2.2.2 온도사이클시험	5	5																					
5.2.3.1 고온단락시험	5	5																					
5.2.3.2 열노출시험	5	2																					
5.2.3.3 압착시험	5	2																					
5.2.3.4 과전류충전시험	5	2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5.2.2 의도된 온도의 안전성시험</p> <p>5.2.2.1 고온방치시험</p> <p>a) 요구사항 전자는 고온방치로 인하여 밀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동 시험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제품에 사용되는 전자에 한한다.</p> <p>b) 시험 조건 완전 충전된 전지를 $90 \pm 2^{\circ}\text{C}$에서 유지되는 공기 순환식 오븐에 넣고 7시간 동안 저장한 후 꺼내어 상온으로 식도록 방치한다.</p> <p>c) 합격 기준 밀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p> <p>5.2.2.2 온도사이클시험</p> <p>a) 요구 사항 고온 및 저온에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하여 밀화 및 폭발되어서는 안 된다.</p> <p>b) 시험 조건 다음의 절차와 그림 1에 나타낸 프로파일에 따라 시험한다. 완전 충전된 단전지 또는 전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강제 순환 채입비에서 온도 사이클 시험 ($-20^{\circ}\text{C} + 75^{\circ}\text{C}$)을 실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단전지 또는 전지를 주변 온도 $75 \pm 2^{\circ}\text{C}$에서 4시간 동안 저장한다. -2단계 : 주변 온도를 30분 내에 $20 \pm 5^{\circ}\text{C}$에서 바꾸고, 이 온도에서 2시간 이상 저장한다. -3단계 : 주변 온도를 30분 내에 $-20 \pm 5^{\circ}\text{C}$로 바꾸고 이 온도에서 4시간 이상 저장한다. -4단계 : 주변 온도를 30분 내에 $20 \pm 5^{\circ}\text{C}$로 바꾸고, 이 온도에서 2시간 이상 저장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5단계 : 1~4단계를 4회 더 반복한다.</p> <p>-6단계 : 5번째 사이클이 끝난 후, 단전지 또는 전지를 24시간 방치한 후 검사한다.</p> <p>비고 이 시험은 온도 변화가 되는 1개의 체임버에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험 온도로 유지되는 3개의 체임버에서 할 수도 있다.</p> <p>c) 합격 기준 누출, 밤화 및 폭발 등이 없어야 한다.</p>  <p>그림 1 5.2.2.2 – 온도사이클시험을 위한 온도 프로파일 (1 사이클)</p>	

5.2.3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시험

5.2.3.1 고온단락시험

- a) **요구사항** 전지의 양극 단자 및 음극 단자를 고온에서 단락시켰을 때, 단전지 표면의 온도가 150°C 미만이어야 하며, 밤화 및 폭발되어서는 안 된다.
- b) **시험조건** 4.2항의 조건에 의해서 완전 충진된 단전지 또는 전지를 주변 온도 $55^{\circ}\text{C} \pm 5^{\circ}\text{C}$ 각각 저장한다. 각각의 단전지 또는 전지는 양극 및 음극 단자에 $80\text{m}\Omega \pm 20\text{m}\Omega$ 의 외부 저항을 연결하여 단락시킨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시험은 단락된 상태로 24시간 동안 지속하거나 전지 케이스의 온도가 상승된 최대 온도분(단전지 표면최대 상승온도에서 주변온도를 뺀 값)의 20 %만큼 감소하면 종료한다.</p> <p>c) 합격 기준 밤화 및 폭발 등이 없어야 한다.</p> <p>5.2.3.2 열노출시험</p> <p>a) 요구 사항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하여 밤화 및 폭발되어서는 안 된다.</p> <p>b) 시험조건 4.2항의 조건에 의해서 완전충진된 상태의 단전지를 오븐에 둘다. 오븐의 온도를 $5 \pm 2^{\circ}\text{C}/\text{min}$의 속도로 $130 \pm 2^{\circ}\text{C}$까지 상승시킨 후 단전지를 이 온도에서 10분간 저장한다.</p> <p>c) 합격 기준 밤화 및 폭발 등이 없어야 한다.</p> <p>5.2.3.3 압착시험</p> <p>a) 요구 사항 심한 압착(예를 들어 쓰레기 압축기에서 폐기될 때)으로 인하여 밤화 및 폭발되어서는 안 된다.</p> <p>b) 시험조건 4.2항의 조건에 의해서 완전충진된 단전지를 두 장의 평면 사이에서 압착한다. 압착은 전지너비 및 직경의 10%에 이를 때까지 압착한다. 각형 및 파우치형 전지의 경우 높이/길이 방향으로 90° 회전하여 좁은 면만을 압착한다. 단전지의 단자 면에 하중을 직접 가해서는 안된다.</p> <p>c) 합격 기준 밤화 및 폭발 등이 없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5. 2. 3. 4 과전류 충전 시험</p> <p>a) 요구 사항 충전기가 오작동하거나 과도한 전류가 병렬 연결된 전지에 흐르는 경우 단전지가 발화 및 폭발되어서는 안 된다.</p> <p>b) 시험 조건 단전지를 KS C IEC 61960-1-2에 규정된 방법과 같이 방전 시킨 후, 제조사가 제시한 충전 전류의 3 배로 전자가 완전 충전되거나 완전 충전 되기 전에도 내부 안전 장치가 작동하여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까지 충전시킨다.</p> <p>c) 합격 기준 발화 및 폭발 등이 없어야 한다.</p> <p>5. 안전을 위한 정보 비산성 및 암광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휴대형 밀폐 2차 단전지 또는 전지를 사용할 경우, 특히 오용할 경우에는 위험이나 유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차 단전지 및 전지 제조자는 기기 제조사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는 최종 사용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차 단전지 및 전지를 포함하는 기기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잠재적인 해저드에 대해 최종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기기 제조사의 책임이다. 가능한 위험에 대한 조언은 KS C IEC 61438에 제공되어 있고, 유용한 권고 사항은 부속서 A와 B에 제공되어 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조사자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7. 검사방법</p> <p>7.1 모델의 구분 리튬2차전지의 모델은 단전지의 경우 전지의 형태별[리튬이온전지(원형, 각형), 리튬폴리머전지],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별, 전류용량별, 에너지 밀도별로 구분하고, 전지는 단전지의 구성, 보호회로의 구성, 적별연결구조별로 구분한다.</p> <p>8. 표시 전지 또는 전지팩 겉면의 눈에 잘 띠는 곳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p> <p>8.1 전지의 종류 보기 리튬이온 2차전지, 리튬이온 폴리머 2차전지</p> <p>8.2 전지의 형식(IEC61960에 따른다)</p> <p>8.3 모델명 다만, 모델명은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p> <p>8.4 공칭 전압</p> <p>8.5 정격 용량</p> <p>8.6 극성</p> <p>8.7 제조자명</p> <p>8.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p> <p>8.9 제조년월</p> <p>8.10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8.11 취급상의 주의사항</p> <p>< 경고 > 발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유판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부품을이 발생된 전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 즉시 문의할 것 b) 지정된 제품 충전기만을 사용할 것 c)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말 것(전자레인지에 넣지 말 것.) d) 여름철 자동차 내부에 방지하지 말 것 e) 찜질방 등 고온다습한 곳에서 보관, 사용하지 말 것 f) 이불, 전기장판, 카펫 위에 올려 놓고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g) 전원을 켠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세요. h) 전지 단자에 목걸이, 동전, 열쇠, 시계 등 금속 제품이 닿지 않도록 주의 i) 휴대 기기, 제조 업체가 보증한 리튬이차전지 사용 j) 분해, 압착, 관통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k)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비정상적 충격을 주지 말 것 l) 60°C 이상의 고온에 노출하지 말 것 m) 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p>6.3 기타 정보 아래의 정보는 전자에 표시되거나 전자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p> <p>- 폐기 지침</p> <p>- 충전 방법에 대한 권고 지침</p> <p>표시 사항과 제조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7. 포장 포장은 운송, 취급, 적재 시의 기계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해야 한다. 재질과 포장 디자인은 의도되지 않은 전기 전도, 단자의 부식, 수분 침투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p> <p>부속서 A(참고) 휴대 기기 제조자와 전자조립자에 대한 권고 사항</p> <p>서문 이 부속서(참고)는 본체 및 부속서(규정)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p> <p>아래는 2차 단전지 및 전지 제조로부터 휴대 기기 제조자 및 전지팩 조립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전형적이지만 비포함적인 유용한 충고 목록을 보여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단전지를 해체하여 열거나 자르면 안 된다. 전자는 속련된 사람에 의해서만 해체되어야 한다. 내부에 여러 개의 단전자가 연결된 전지 케이스는 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b) 단전지나 전지를 단락시키서는 안 된다. 단전지나 전지를 서로 간에 단락되거나 전도성 재질에 의해 단락되는 상자나 서랍에 보관하면 안 된다. c)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단전지나 전지를 원래 포장으로부터 세가하면 안 된다. d) 단전지나 전지를 열이나 화기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적사광선에서의 저항을 피한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설〉	<p>e) 단전지나 전지에 기계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p> <p>f) 단전지 누출의 경우 액체에 피부 나 눈을 접촉시키지 않는다. 만약 접촉했 다면 접촉 부위를 충분한 양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p> <p>g) 기기는 부정확한 단전지 또는 전 지의 삽입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분명한 국성 표시를 가져야 한다. 항 상 단전지, 전지 및 기기의 국성 표시를 확인하고 바로게 사용한다.</p> <p>h) 제조자, 용량, 크기 및 형식이 다 른 단전지를 전지 내에 혼용하지 않는다.</p> <p>i) 만약 단전지나 전지를 삽쳤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p> <p>j) 한 전지 내에 조립되는 단전지의 최대 개수와 단전지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단전지/전지 제조자에게 문의한다.</p> <p>k) 각 기기에 대해서는 전용 충전기 가 공급되어야 한다.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2차 단전지 및 전지에는 완전한 충 전 지시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p> <p>l) 단전지 및 전지를 깨끗하고 건조 하게 보관한다.</p> <p>m) 단전지나 전지가 더러워졌을 경 우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는다.</p> <p>n) 2차 단전지 및 전지를 사용 전 충전할 필요가 있다. 항상 단전지 또는 전 지 제조자의 지시 사항을 참조하고 옮바 로 충전 방법을 사용한다.</p> <p>o) 사용하지 않을 때 2차 단전지 및 전지를 충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p>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설〉	<p>p) 장기간 보관 후에는 최대의 성능 을 얻기 위해 단전지 또는 전지를 몇 차 례 방전 및 충전할 필요가 있다.</p> <p>q) 2차 단전지와 전지는 정상 상온 에서 작동될 때 최고의 성능을 나타낸다.</p> <p>r) 원래의 단전지 및 전지 문현들을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p> <p>s) 2차 단전지나 전지를 폐기할 때 는 서로 다른 전기 화학 시스템을 가진 단전지나 전지를 서로 격리한다.</p>	<p>부속서 B(참고) 최종 사용자에 대한 권 고 사항</p> <p>서 문 이 부속서(참고)는 본체 및 부속 서(규정)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하는 것으 로,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p> <p>아래는 휴대 기기 제조자로부터 최종 사 용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전형적이지만 비 포괄적인 유용한 충고 목록을 보여 준다.</p> <p>a) 단전지를 해체하여 열거나 자르 지 않는다.</p> <p>b) 단전지나 전지를 열이나 화기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직사광선에서의 저장 을 피한다.</p> <p>c) 단전지나 전지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단전지나 전자를 서로 간에 단락 되거나 전도성 재질에 의해 단락되는 삼 자나 서랍에 보관하면 안 된다.</p>

현 행	개정안	비 고
<p><u><신설></u></p> <p>d)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단진지나 전지를 원래 포장으로부터 제거하면 안 된다.</p> <p>e) 단진지나 전지에 기계적 충격을 가지지 않는다.</p> <p>f) 단진지 누출의 경우 액체에 피부나 눈을 접촉시키지 않는다. 만약 접촉했다면 접촉 부위를 충분한 양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p> <p>g) 기기와 함께 제공된 것 외에는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p> <p>h) 단진지, 전지, 기기상의 양극(+)과 음극(-)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p> <p>i) 해당 기기에 사용되도록 고안되지 않은 단진지나 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p> <p>j) 제조자, 용량, 크기 및 형식이 다른 단진지를 전자 내에 허용하지 않는다.</p> <p>k) 단진지 및 전지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p> <p>l) 만약 단진지나 전지를 삼켰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p> <p>m) 항상 기기에 맞는 단진지나 전지를 구입한다.</p> <p>n) 단진지 및 전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보관한다.</p> <p>o) 단진지나 전지가 더러워졌을 경우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는다.</p>		

현 행	개정안	비 고
<p><u><신설></u></p> <p>p) 2차 단진지 및 전지는 사용 전 충전할 필요가 있다. 항상 단진지 또는 전지 제조자의 지시 사항을 참조하고 올바른 충전 방법을 사용한다.</p> <p>q) 사용하지 않을 때 2차 단진지 및 전지를 충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p> <p>r) 장기간 보관 후에는 최대의 성능을 얻기 위해 단진지 또는 전지를 몇 차례 방전 및 충전할 필요가 있다.</p> <p>s) 2차 단진지와 전지는 정상 상온($(20\pm 5^{\circ}\text{C})$)에서 작동될 때 최고의 성능을 나타낸다.</p> <p>t) 원래의 단진지 및 전지 문현들을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p> <p>u) 단진지나 전지를 의도된 용도에만 사용한다.</p> <p>v)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지를 기기로부터 분리한다.</p> <p>w)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p>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 생활화학가정용품(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부 세정제	제1부 세정제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세정제의 안전요 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세정제란 일반 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의 물체를 세정할(깨 끗이 닦을) 용도로 사용되는 액체 상태(예 어로풀상, 젤상을 포함한다)의 화학제품을 말한다. 세정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의 약부외품(콘택트 렌즈 세정용 등), 인체 세정용(보발 샴푸, 바디 샴푸 등), 화장용 품 세정용, 주방용 세제류, 합성 세제류, 배수관 세척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바닥, 가구, 자동차 등의 광택제는 검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품의 주 기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더라도 부가적으로 세정기능을 갖는 제품은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1. 적용범위----- 광택제는 제3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 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 명서 등에 별도 표시 할수 있다. 7.1.1 품명 ^(*) <단서신설> 7.1.1 품명 ^(*)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 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2 (생략) 7.1.2 (현행과 같음) 7.1.3 모델명 <단서신설> 7.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 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7.1 표 시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현 행	개정안	비 고
7.1.4 ~ 7.1.6 (생략)	7.1.4 ~ 7.1.6 (현행과 같음)	
7.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1.8 제조국명 <단서신설>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 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제2부 방향제	제2부 방향제	
7.1 표 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 명서 등에 별도 표시 할수 있다.	7.1 표 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 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7.1.1 품명 <단서신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 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증복표시 지양
7.1.2 (생략)	7.1.2 (현행과 같음)	
7.1.3 모델명 <단서신설>	7.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 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증복표시 지양
7.1.4 ~ 7.1.6 (생략)	7.1.4 ~ 7.1.6 (현행과 같음)	
7.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1.8 제조국명 <단서신설>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 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제3부 접착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수 있다.	7.1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7.1.1 품명 <단서신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종복표시 지양
7.1.2 (생략)	7.1.2 (현행과 같음)	
7.1.3 모델명 <단서신설>	7.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종복표시 지양
7.1.4 ~ 7.1.6 (생략)	7.1.4 ~ 7.1.6 (현행과 같음)	
7.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1.8 제조국명 <단서신설>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제4부 광택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수 있다.	7.1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3. 종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광택제 희석유, 비닐유, 고부유, 구동유, 가수유 및 건물바닥, 자동차의 윤면 등 기타 물체의 보호방태용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래자와스, 구두약, 바닥용광택왁스, 가구용왁스, 바다용광택왁스 등)으로 그 성성별로 액체, 스프레이, 고체로 구분한다.	광택제 희석유, 비닐유, 고부유, 구동유, 가수유 및 건물바닥, 자동차의 윤면 등 기타 물체의 보호방태용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래자와스, 구두약, 바닥용광택왁스, 가구용왁스, 바다용광택왁스 등)으로 그 성성별로 액체, 스프레이, 고체로 구분한다.	티슈형이 포함됨을 명확화
7.1.1 품명() <단서신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종복표시 지양
7.1.2 (생략)	7.1.2 (현행과 같음)	
7.1.3 모델명 <단서신설>	7.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종복표시 지양
7.1.4 ~ 7.1.6 (생략)	7.1.4 ~ 7.1.6 (현행과 같음)	
7.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1.8 제조국명 <단서신설>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제5부 탈취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수 있다.	7.1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7.1.1 품명 <단서신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종복표시 지양
7.1.2 (생략)	7.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7.1.3 모델명 <단서신설>	7.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증복표시 지양
7.1.4 ~ 7.1.6 (생략)	7.1.4 ~ 7.1.6 (현행과 같음)	
7.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사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1.8 제조국명 <단서신설>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제6부 합성세제	제6부 합성세제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합성세제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합성세제란 주로 일반가정에서 의류 등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제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적용범위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3. 종류 (생략)	3. 종류 (현행과 같음)	
3.1 산.염기도에 따른 종류	3.1 산.염기도에 따른 종류 ⁽¹⁾	산.염기도에 따라 종류 분류
(1) 제1종 ⁽¹⁾ 약암카리성	(1) 약암카리성 ⁽²⁾ (pH 8.0~11.0)	
(2) 제2종 ⁽²⁾ 약암카리성, 중성	(2) 중성 ⁽³⁾ (pH 6.0~8.0)	
(3) 제3종 ⁽³⁾ 중성		
<신설>	주 ⁽¹⁾ pH 시험 농도는 시료 세제의 표준사용농도(g/L)로 한다	위치 변경
주 ⁽¹⁾ 면,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 제품 세탁에 적합한 것으로 분말상, 입자상인 것.	주 ⁽²⁾ 면,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 제품 세탁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인 것.	고체상이 포함됨을 명확화
⁽²⁾ 면,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 제품 세탁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인 것.	<삭제>	종류 변경에 따른 삭제
⁽³⁾	⁽³⁾	고체상이 포함됨을 명확화
		액상, 고체상인 것.

현행	개정안	비고																								
3.2 성상에 따른 종류	3.2 성상에 따른 종류																									
(1)~(3) (생략) <신설>	(1)~(3) (현행과 같음) (4) 고체상	고체상을 종류에 반영																								
4. 안전요건	4. 안전요건																									
4.1 합성 세제는 분말상, 작은 입자상 및 액상으로 5.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4.1 _____ 작은 입자상, 액상 및 고체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고체상 명확화																								
<신설>	4.1.1 생분해도(%)는 90 이상이여야 한다.																									
	4.1.2 전인산염(P ₀₅ 로서)(%)은 1.0 미만이여야 한다. 전인산염은 표준 사용 농도가 40g/30L인 경우의 세제 중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제에 따라 표준 사용 농도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약알칼리성 및 중성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제의 표준 사용 농도에 대한 전 인산염이 P ₀₅ (환산값) (*)으로 하여 26.7mg/L이하로 되어야 한다.	안전요건 위치이동																								
표 1	표 1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종 류 형 상 목</th> <th>제1종</th> <th>제2종</th> <th>제3종</th> </tr> </thead> <tbody> <tr> <td>pH(25° C)</td> <td>8.0~11.0</td> <td>6.0~11.0</td> <td>6.0~8.0</td> </tr> <tr> <td>계면활성제 상당분(환산값) (mg/L)</td> <td>100~400</td> <td>300~700</td> <td>200~700</td> </tr> <tr> <td>표면 장력(25° C)</td> <td>-</td> <td>-</td> <td>40 mN/m 이하</td> </tr> <tr> <td>생분해도(%)</td> <td>90 이상</td> <td>90 이상</td> <td>90 이상</td> </tr> <tr> <td>전 인 산 염 (P₀₅로서)(%)</td> <td>1.0 미만</td> <td>1.0 미만</td> <td>1.0 미만</td> </tr> </tbody> </table>	종 류 형 상 목	제1종	제2종	제3종	pH(25° C)	8.0~11.0	6.0~11.0	6.0~8.0	계면활성제 상당분(환산값) (mg/L)	100~400	300~700	200~700	표면 장력(25° C)	-	-	40 mN/m 이하	생분해도(%)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전 인 산 염 (P ₀₅ 로서)(%)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계면활성제 상당분, 표면장력 삭제 및 안전요건 위치이동
종 류 형 상 목	제1종		제2종	제3종																						
	pH(25° C)	8.0~11.0	6.0~11.0	6.0~8.0																						
계면활성제 상당분(환산값) (mg/L)	100~400	300~700	200~700																							
표면 장력(25° C)	-	-	40 mN/m 이하																							
생분해도(%)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전 인 산 염 (P ₀₅ 로서)(%)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비고 1. pH, 표면 장력 및 세척력의 시험 농도는 시료 세제의 표준사용농도(g/L)로 한다	<삭제>	위치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비고 2. 전 인산염은 표준 사용 농도가 40g/30L이 경우의 세제 중 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제에 따라 표준 사용 농도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약암カリ성 및 중성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제의 표준 사용 농도에 대한 전 인산염이 P ₂ O ₅ (환산값) (*) 으로 하여 26.7mg/L이하로 되어야 한다.	〈삭제〉	위치 이동
주(*) 환산값의 산출법 $X = \frac{A \times M}{W} \times \frac{1000}{100}$ $Y = \frac{B \times M}{W} \times \frac{1000}{100}$ 여기에서 X : 계면 활성제 상당분(환산값) (mg/L) Y : P ₂ O ₅ (환산값) (mg/L) A : 계면 활성제 상당분(%) B : 전 인산염(%) W : 사용세탁수량(L) M : 표준사용량(g)	주(*) 환산값의 산출법 $X = \frac{A \times M}{W} \times \frac{1000}{100}$ 여기에서 X : P ₂ O ₅ (환산값) (mg/L) A : 전 인산염(%) W : 사용세탁수량(L) M : 표준사용량(g)	계면 활성제 상당분 산출 반영
5. 시험방법	5. 시험방법	
5.1 (생략)	5.1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5.2 계면활성제 상당분 KS M 2709의 6.7에 따른다.	〈삭제〉	계면활성제 상당분 산출 반영
5.3 표면장력 KS M 2709의 7.4에 따른다.	〈삭제〉	표면장력 산출 반영
7.1 표시 합성세제는 용기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7.1 표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7.1 품명 및 종류 〈단서신설〉	7.1 품명 및 종류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중복표시 지양
7.2~7.6 (생략)	7.2~7.6 (현행과 같음)	
7.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사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8 제조국명 〈단서신설〉	7.8 제조국명 〈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표시 예) 1) (생략) 2) 종류는 약암カリ성 제1종, 중성 등으로 기입한다.	(표시 예) 1) (현행과 같음) 2) 종류는 액성과 성상을 함께 기입한다. 중성의 액상 세제는 중성, 액상으로 기입하고 약암カリ성의 분말 세제는 약암カリ성, 분말상 등으로 기입한다.	종류 구분 변경 반영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6) 표준사용량의 표시는 세탁수 (5 L 또는 30 L) 또는 세탁할 의류량(kg)에 대한 세제 사용량(g 또는 mL)으로 표시한다. 〈신설〉 다만, 스프레이형 제품은 표준사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 세탁수 (1L, 5 L 또는 30 L)에 ----- --- 표시한다. 세탁할 의류량(kg)에 대한 세제 사용량(g 또는 mL)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다. -----.	
제7부 표백제	제7부 표백제	
7.1 표시 표백제의 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7.1 표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7.1 품명 및 종류 <단서신설>	7.1 품명 및 종류(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증복표시 지양
7.2~7.7 (생략)	7.2~7.7 (현행과 같음)	
7.8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8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사,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9 제조국명 <단서신설>	7.9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제8부 섬유유연제	제8부 섬유유연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자위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수 있다.	7.1 표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7.1.1 품명 <단서신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증복표시 지양
7.1.2~7.1.8 (생략)	7.1.2~7.1.8 (현행과 같음)	
7.1.9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9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사,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7.1.10 제조국명 <단서신설>	7.1.10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표시사항 명확화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2 디지털도어록 (관보 게재시 내용 상세)

현행	개정안	비고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디지털도어록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디지털도어록이란 건축물 입구 출입문 등에 사용되며 모터나 슬리드노이드 등의 전기적 동작에 의해 간접적으로 테드볼트를 동작시키는 도어록(이하 디지털 도어록이라 한다)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적용범위 래치볼트반 구성된 도어록 신설	
2. 관련규격 (생략) KS B 3027 수동식 토크 렌치 KS B 6411 원통형, 륨블리형 및 상자형 도어록	KS C 0220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저온(내한성)시험 방법 KS C 0221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고온(내열성)시험 방법 KS C IEC 61000-4-2 전기 자기 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제2절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KS C IEC 61000-4-3 전기 자기 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제3절 : 전기 자기 방사 내성 시험 KS C IEC 61000-4-8 전기 자기 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제8절 : 전원 주파수 자체 내성 시험 KS F 2257-1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일반 요구 사항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KS F 4504 래버 텀블리형 자물쇠 KS X ISO/IEC 10373-1 ID 카드-시험 방법-제1부 : 일반 특성 시험	규격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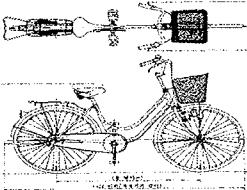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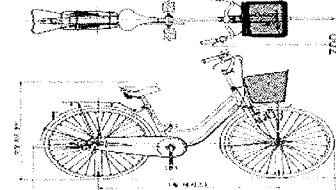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3.2 키 디지털 도어록을 제어하여 개폐하는 정보 혹은 정보 캐리어에 사용한다.	3.2 키 ----- 개폐하는 -----	자구수정
3.7 화재시 대비방법 내열식은 6.4항의 시험 후 정상 동작하는 제품이고, 온도센서식은 6.4항의 시험 중 혹은 해당 온도에서 태드볼트가 자동해제 되는 제품을 말한다.	3.7 화재시 대비방법 ----- 270°C에서 태드볼트를 해제할 수 있는 제품은 정상동작할 수 없음	
5.3 온습도사이클 시험 6.1항의 시험 중 각각의 t1, t2의 중간 시간 이후마다 향온항습기 내에서 디지털도어록의 주입력키로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해야 한다. (시험시 전전지는 제거)	5.3 환경 시험 5.3.1 내한성시험 6.1. 항 시험 후 상온에서 5 분이내 디지털도어록의 주입력키로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해야 한다. (시험시 전전자는 제거) 5.3.2 내열성시험 6.1.2항 시험 후 상온에서 5 분이내 디지털도어록의 주입력키로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해야 한다. (시험시 전전자는 제거)	기후 조건이 겨울인 경우 기후 조건이 여름(설내)인 경우 기후 조건이 여름(장비)인 경우

현행	개정안	비고
5.7 화재시 대비시험 6.4항에 따라 시험 후 내기에서 조작으로 도어록을 열고 나갈 수 있어야한다. 온도센서식은 가로, 세로 10 cm 정사각형의 열판을 온도센서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외기표면에서 10분 동안 접촉 시켰을 때 태드볼트가 동작하지 않아야한다. 열판 중심부의 온도는 (100 ± 10) °C이어야 한다. 10회이상 반복하여 이상 없이 작동해야 한다.	5.7 화재시 대비시험 ----- 부합화 온도센서 더지털 도어록의 화재시 내기 예 서의 작동 유무 확인 또한 온도센서식은 온도센서로 인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에서 디지털도어록은 제조자의 설정온도 ±10 °C에서 자동으로 태드볼트가 작동하여야한다. 이때 상승온도변화는 1 °C/min으로 한다.	KS C 9806
6.1 온습도 사이클시험 다음 그림 (생략)과 같이 온도 및 습도 사이클시험을 실시한다.	6.1 내한성시험 정상작동된 시료를 향온항습기에 넣고, 온도 -15±2 °C에서 48시간 냉치 후 꺼내어 상온에서 5 분 이내 디지털도어록의 주입력키로 동작시켰을 때 정상동작해야 한다.	기후 조건이 겨울인 경우. (KS C 0220) 환경 시험 방법-진기, 전자-저온(내한성)시험 방법(IEC 60068-2-1)

현 행	개정안	비 고
<u><신설></u>	<p>6.1.2 내열성시험 정상작동된 시료를 - 기후 조 항온항습기에 넣고, 온도 $55\pm2^{\circ}\text{C}$에서 전이 여름 48시간 방치 후 꺼내어 상온에서 5분 (설내) 인경 이내 디지털도어록의 주 입력키로 동 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해야 한다.</p> <p>(KS C 0221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고온 (내열성) 시 험 방법) (I E C 60068-2-2)</p>	
<u><신설></u>	<p>6.1.3 내습성시험 정상작동된 시료를 - 기후 조 항온항습기에 넣고, 온도 $40\pm2^{\circ}\text{C}$ 습도 90±5 %에서 48시간 방치 후 꺼내어 전이 여름 상온에서 5분이내 디지털도어록의 주 (장마) 인경 우. 입력키로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해야 한다.</p> <p>(KS C 0222 환경 시험 방법 (전기. 전자)- 고온 고습 (정상) 시험 방법) (I E C 60068-2-3)</p>	
7. 검사항목 - 운송도상이율시험	7. 검사항목 - 환경시험	시험 항목 변경 반영

현 행	개정안	비 고
9. 표시사항	9. 표시사항	
9.1 표시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9.1 표시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9.1.1 품명 <단서신설>	9.1.1 품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9.1.2 (생략)	9.1.2 (현행과 같음)	
9.1.3 모델명 <단서신설>	9.1.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9.1.4 ~ 9.1.6 (생략)	9.1.4 ~ 9.1.6 (현행과 같음)	
9.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9.1.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제조 은 국내 제조사, 수입품은 경우에 수 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9.1.8 제조국명 <단서신설>	9.1.8 제조국명 (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부역법에 의거 표 기)	표시사항 명확화
9.1.9~9.1.10(생략)	9.1.9~9.1.10 (현행과 같음)	
9.2~9.2.5(생략)	9.2~9.2.5 (현행과 같음)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0 이륜자전거(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현행			개정안			비고																															
4. 종 류 자전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4. 종 류 자전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자전거의 종류			표 1 자전거의 종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차 종</th> <th rowspan="2">인수비 거리 (m)</th> <th colspan="2">제 동 장 치</th> <th colspan="2">구 동 부</th> </tr> <tr> <th>수 동 제동</th> <th>동 터브 제동</th> <th>전동 방식</th> <th>체인 지 기어</th> </tr> </thead> <tbody> <tr> <td>스포츠자 리니 사이클 경쾌자 실용자 어린이자</td> <td>5m 미만 이상</td> <td>로드식 화이어식 유압식</td> <td>코스 트 터브</td> <td>체인 구동식 있음 또는 밸트 구동식</td> <td>전동 방식 없음 또는 밸트 없음</td> </tr> </tbody> </table>			차 종	인수비 거리 (m)	제 동 장 치		구 동 부		수 동 제동	동 터브 제동	전동 방식	체인 지 기어	스포츠자 리니 사이클 경쾌자 실용자 어린이자	5m 미만 이상	로드식 화이어식 유압식	코스 트 터브	체인 구동식 있음 또는 밸트 구동식	전동 방식 없음 또는 밸트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차 종</th> <th rowspan="2">인수비 거리 (m)</th> <th colspan="2">제 동 장 치</th> <th colspan="2">구 동 부</th> </tr> <tr> <th>수 동 제동</th> <th>동 터브 제동</th> <th>전동 방식</th> <th>체인 지 기어</th> </tr> </thead> <tbody> <tr> <td>스포츠자 리니 사이클 경쾌자 실용자 어린이자</td> <td>5m 미만 이상</td> <td>로드식 화이어식 유압식</td> <td>코스 트 터브</td> <td>체인 구동식 있음 또는 밸트 구동식</td> <td>전동 방식 없음 또는 밸트 없음</td> </tr> </tbody> </table>		차 종	인수비 거리 (m)	제 동 장 치		구 동 부		수 동 제동	동 터브 제동	전동 방식	체인 지 기어	스포츠자 리니 사이클 경쾌자 실용자 어린이자	5m 미만 이상	로드식 화이어식 유압식	코스 트 터브	체인 구동식 있음 또는 밸트 구동식	전동 방식 없음 또는 밸트 없음	
차 종	인수비 거리 (m)	제 동 장 치			구 동 부																																
		수 동 제동	동 터브 제동	전동 방식	체인 지 기어																																
스포츠자 리니 사이클 경쾌자 실용자 어린이자	5m 미만 이상	로드식 화이어식 유압식	코스 트 터브	체인 구동식 있음 또는 밸트 구동식	전동 방식 없음 또는 밸트 없음																																
차 종	인수비 거리 (m)	제 동 장 치		구 동 부																																	
		수 동 제동	동 터브 제동	전동 방식	체인 지 기어																																
스포츠자 리니 사이클 경쾌자 실용자 어린이자	5m 미만 이상	로드식 화이어식 유압식	코스 트 터브	체인 구동식 있음 또는 밸트 구동식	전동 방식 없음 또는 밸트 없음																																
5.1.1 치수			5.1.1 치수																																		
																																					
5.14 실용 종합 성능			5.14 실용 종합 성능																																		
<p>자전거는 7.9의 노상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 상한 음향, 훨거음, 탈락, 단선,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 후 통상이 승차 주행에서 안정된 선화 및 방향 유지가 가능하고, 수신호 등을 위해 한손을 놓은 주행에서 조종 곤란 또는 위험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시험 장소,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7.10의 타행성 시험에 이어 7.11.2의 내진성 시험을 하고 각각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p>			<p>자전거는 7.9의 노상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 상한 음향, 훨거음, 탈락, 단선,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 후 통상이 승차 주행에서 안정된 선화 및 방향 유지가 가능하고, 수신호 등을 위해 한손을 놓은 주행에서 조종 곤란 또는 위험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시험 장소,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7.10의 타행성 시험에 이어 7.11.2의 내진성 시험을 하고 각각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p>																																		
5.14.1 7.11.2의 내진성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한 소리, 훨거음, 탈락, 단선,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			5.14.1 KS R 8008 8.10 의																																		

현행	개정안	비고
	5.15.4 차체 경첩의 고정 강도(접이식 자전거) KS R 8031 부속서 1에 따른다. 〈신설〉	KS R 8031 (접음식 자전거 부품의 강도시험) 부합화
	7.5.3 핸들 경첩의 고정강도(접이식 자전거) KS R 8031 부속서 2에 따른다. 〈신설〉	KS R 8031 (접음식 자전거 부품의 강도시험) 부합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부속서 1 차체의 강도 〈신설〉	<p>부속서 1 차체의 강도</p> <p>3. 내하중 낙하 충격성 부속서 1 그림</p> <p>6파 깊이 1 kg 이하의 경량볼리를 앞포크에 부착하고 차체를 연직으로 유지하고 고정대에 뒤 차축으로 고정하여 26.5 kg 의 추를 180 mm 의 높이에서 앞뒤 차축의 중심점을 잇는 선을 따라 앞차축부의 경량볼리와 충돌하도록 연직으로 낙하시켜 시험 전후의 차축간 거리를 측정했을 때, 영구 변형량은 20 mm 이하이고, 또한 기타 차체 각 부에 심한 파손이 생겨서는 안된다.</p> <p>또한, 위파이프가 말착석 또는 가동식인 차체는 위파이프를 떼어낸 상태에서 한다.</p> <p>부속서 1 그림 6 차체 하중낙하 충격시험</p> <p>단위 : mm</p>	<p>부속서 1 차체의 강도</p> <p>유사산악용 차전거</p> <p>차체강도의 시험 -1부</p> <p>일반용차전거 내하중 낙하 충격시험방법 삽입</p>

현 행	개 정(안)	비 고
9. 표 시	9. 표 시	
9.1 제품의 표시 차전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위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9.1 제품의 표시-----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 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띠기하여야 한다.	
9.1.1 품 명 〈단서신설〉	9.1.1 품 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9.1.2 (생략)	9.1.2 (현행과 같음)	
9.1.3 모델명 〈단서신설〉	9.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9.1.4 ~9.1.7 (생략)	9.1.4 ~9.1.7 (현행과 같음)	
9.1.8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9.1.8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사,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9.1.9 제조국명 〈단서신설〉	9.1.9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주 ⁽⁸⁾ 차체 번호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통·용 번호로 한다.	표시사항 명확화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1 일회용 기저귀 (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현 행	개정안	비 고																																																												
<p>4.3 방수총 흡수된 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수한 면으로 구성상 최하위층에 있는 면을 말한다.</p>	<p>4.3 방수총 ----- --- 방수한 ----- -----.</p>	자구수정																																																												
<p>5. 안전요건 (생략)</p> <p>표 1 안전요구 사항</p>	<p>5. 안전요건 (현행과 같음)</p> <p>〈표 1〉 안전요구 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 목 항 목</th> <th colspan="2">1회용 기저귀</th> <th rowspan="2">위생 감개 (매트) (매트)</th> </tr> <tr> <th>유아용</th> <th>성인 용</th> </tr> </thead> <tbody> <tr> <td>pH</td> <td colspan="3">3.0 ~ 10.0</td> </tr> <tr> <td>형광증백제</td> <td colspan="3">용출되지 않은 것</td> </tr> <tr> <td>불안대하야드 (mg/kg)</td> <td>검출되지 않음 것^①</td> <td>75 이하</td> <td>300 이하</td> </tr> <tr> <td>염소화페衩 (mg/kg)</td> <td>POP^② TeCP^③</td> <td colspan="2">0.5 이하</td> </tr> <tr> <td>아조염료^④ (mg/kg)</td> <td colspan="3">각각 30이하</td> </tr> </tbody> </table>	품 목 항 목	1회용 기저귀		위생 감개 (매트) (매트)	유아용	성인 용	pH	3.0 ~ 10.0			형광증백제	용출되지 않은 것			불안대하야드 (mg/kg)	검출되지 않음 것 ^①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衩 (mg/kg)	POP ^② TeCP ^③	0.5 이하		아조염료 ^④ (mg/kg)	각각 30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 목 항 목</th> <th colspan="2">1회용 기저귀</th> <th rowspan="2">위생 감개 (매트) (매트)</th> </tr> <tr> <th>유아용</th> <th>성인 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չ제〉</td> <td colspan="3">〈չ제〉</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colspan="3">---</td> </tr> </tbody> </table>	품 목 항 목	1회용 기저귀		위생 감개 (매트) (매트)	유아용	성인 용	---	---			〈չ제〉	〈չ제〉			---	---			~	---	---	---	---	---			---	---			---	---			형광증백제의 피부접촉에 의한 인체유해성이 적으므로 안전요건에서 삭제
품 목 항 목		1회용 기저귀			위생 감개 (매트) (매트)																																																									
	유아용	성인 용																																																												
pH	3.0 ~ 10.0																																																													
형광증백제	용출되지 않은 것																																																													
불안대하야드 (mg/kg)	검출되지 않음 것 ^①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衩 (mg/kg)	POP ^② TeCP ^③	0.5 이하																																																												
아조염료 ^④ (mg/kg)	각각 30이하																																																													
품 목 항 목	1회용 기저귀		위생 감개 (매트) (매트)																																																											
	유아용	성인 용																																																												
---	---																																																													
〈չ제〉	〈չ제〉																																																													
---	---																																																													
~	---	---	---																																																											
---	---																																																													
---	---																																																													
---	---																																																													
<p>비고 주(1) (생략)</p> <p>6.2 형광증백제 이동</p> <p>6.2.1 장치 및 기구</p> <p>6.2.1.1 자외선 램프 파장 300~400nm 의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는 것</p> <p>6.2.1.2 pH미터</p> <p>6.2.1.3 거름종이 조각 KS M 7602에 규정하는 거름종이 No. 5의 거름종이를 나비 약 2.5 cm, 깊이 5~7 cm로 자른 것</p> <p>6.2.2 시 약</p> <p>6.2.2.1 암모니아수 KS M 8357에 규정된 것</p> <p>6.2.2.2 염산 KS M 1206에 규정된 것</p>	<p>비고 주(1) (현행과 같음)</p> <p>〈չ제〉</p>	시험방법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6.2.3 시험편 1 회용 기저귀는 피부가 닿을 수 있는 안감에서 $5 \times 5 \text{ cm}$ 를 채취한다(안감에 붙어 있는 충을 데내어 분리한다.) 위생깔개 매트는 가장자리 부위에서 최소 10 cm 떨어진 곳에서 $5 \times 5 \text{ cm}$ 를 채취한다.	<삭제>	
6.2.4 시험방법		
6.2.4.1 암설 또는 암상자에서 자외선 웨프로 시험편의 형광유무를 확인한다.(보라색 또는 청색 형광을 발하는지 확인).		
6.2.4.2 시험편이 형광반응을 나타내면 형광물질이 시험조건에서 용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과정을 따른다.		
6.2.4.2.1 중류수를 100 mL 를 비아커에 가하고 pH값이 $7.5 \sim 9$ 로 맞추기 위하여 0.1% 암모니아수를 가한다.		시험방법 삭제
6.2.4.2.2 시험편을 6.3.4.2.1 의 용액에 넣고, 40°C 에서 약 10 분동안 치운 후, 유리솜으로 분逡물을 여과한다.		
6.2.4.2.3 pH값을 $3 \sim 5$ 로 맞추기 위하여 6.3.4.2.2 의 여과액에 붉은 잎산 용액을 기한다. 산성화된 여과액에 기름종이 조각을 넣고 40°C 항온 수조에서 30 분 동안 침지시킨다.		
6.2.4.2.4 이 거름종이 조각을 40°C 의 물에 5 분 동안 담가서 씻는다. 이 씻는 조각을 2 회 반복한 뒤 거름종이 조각을 꺼내어 다른 세로운 거름종이 사이에 끼워서 수분을 제거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6.2.4.2.5 암설 또는 암상자에서 차외 선 램프를 이용하여 약 20~30 cm 떨어 져서 조사하여 물에 담근 종이와 비교 한다.	〈삭제〉	시험방법 삭제
6.2.5 판정 거름종이 조각이 밟게 빛 나면 용출가능한 형광증백제가 존재하 다고 판정한다.		
8.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 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 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 다.	8. 표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8.1 품명 및 종류 제품명 및 종류는 3. 종류란에 표기된 내용으로 표기한다. 〈단서 신설〉	8.1 품명 및 종류 ----- ----- (품명은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 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8.2 (생략)	8.2 (현행과 같음)	
8.3 모델명 <단서신설>	8.3 모델명 (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8.4 ~ 8.9 (생략)	8.4~8.9 (현행과 같음)	
8.10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8.10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 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 입자)	표시사항 명확화
8.11 제조국명 <단서신설>	8.11 제조국명 (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 기)	표시사항 명확화
8.13 사용상의 주의사항 (생략)	8.13 사용상의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	
8.14 사용후 처리방법 (생략)	8.14 사용후 처리방법 (현행과 같음)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관보 게재시) 내용상태

현행	개정안	비고
4.2 구조	4.2 구조	
4.2.1 (생략)	4.2.1 (현행과 같음)	길이제한 삭제
4.2.2 (생략)	4.2.2 (현행과 같음)	
4.2.3 A종은 전체길이가 8 cm 이상이여 야 한다.	〈삭제〉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 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의 사항을 표 시한다.	7.1 표시 -----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 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	시행규칙 표시사항 반영
7.1.1 품명 <단서신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7.1.2 (생략)	7.1.2 (현행과 같음)	
7.1.3 모델명 <단서신설>	7.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 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중복표시 지양
7.1.4 ~ 7.1.6 (생략)	7.1.4 ~ 7.1.6 (현행과 같음)	
7.1.7 주소 및 전화번호 <단서신설>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 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 입자)	표시내용 명확화
7.1.8 제조국명 <단서신설>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 기)	표시내용 명확화
7.2 사용상 주의사항 (생략)	7.2 사용상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 11. 5(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 - 723)
- 전화 : 02-509-7246~9
- 팩스 : 02-509-7302

